

개인신용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1.9.30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개인신용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 조 및 제 12 조 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신용정보 처리”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처리자”란 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 2 조제 6 호 및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 31 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신용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 2 장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제 5 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신용정보법 제 23 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나.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 기타 법률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법 제 37 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나.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신용정보법 제 15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제 6 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5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매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신용정보처리자와 제 3 자의 개인신용정보 공유 등 개인신용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 17 조의 “제 3 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신용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내용을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 18 조의 “제 3 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신용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처리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 ⑤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8 조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개인신용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법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 20 조제 2 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 1 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 조(개인신용정보의 파기)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 이내에 한한다)
2.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 3. 상법 제 33 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4.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시행령 제 16 조제 2 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 11 조(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존)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21 조제 1 항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법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법 제 23 조제 1 호 및 법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법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신용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13 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② 시행령 제 17 조제 1 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 22 조제 5 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법 제 22 조제 5 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3 영업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제 14 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23 조제 1 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5 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①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2 호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는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말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16 조(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 2 절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 17 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18 조(개인신용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한다.

제 19 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 26 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 20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21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 4 절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

제 22 조(개인신용정보의 유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 23 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신용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2 호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 24 조(통지의 연기)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27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정보주체에의 유출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조치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5. 기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1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 27 조제 1 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 25 조(통지방법)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 27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1 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 27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 26 조(개인신용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 39 조제 2 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고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 1 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 27 조제 1 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한 표를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27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7 영업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 27 조(개인신용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35 조제 3 항 후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 41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 35 조제 4 항제 3 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 3 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신용정보법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 36 조제 1 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29 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 37 조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30 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 제 46 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6 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 31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법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 31 조에 따른 공시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제 3 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 32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3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5 호 및 시행령 제 31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 ③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개인신용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시행령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 35 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신용정보처리자는 제 38 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보 칙

제 1 조(처리 중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